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중친회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 T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종중인 원고의 재산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종원인 V, W, X, 피고 H, T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종원들의 공유로,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종원들의 합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모두 해지하는바,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 T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잔존 합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한편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칙 제2조에서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Y씨 17세 조상인 Z 할아버지의 후손으로서 19세조 AA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본회 가입에 찬동한 자에 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인정되는바,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후손들의 조상숭배와 일가간의 화합, 후손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공동의 재산을 올바르게 유지, 보존,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장을 선임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종중 유사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된다.¹⁾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인 2022. 8. 27. 원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제기와 기존의 소송행위를 추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회원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가정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체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일부 회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 유사단체인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의 인낙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O에 대한 청구도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송현정, 판사 박예지

목 목

1.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6239㎡
 이전할 지분표시: 31195분의 14,665, 공유자 , , ,
, 지분전부

2.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34971㎡
 3.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162㎡
 4.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162㎡
 5.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1331㎡
 6.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253㎡
 이상 공유자: , , , ,

7. 충청남도 예산군 임야 34950㎡
 합유자 , , , ,

1)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처음부터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을 하여 왔다면 그 실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참조), 법원으로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재 여부를 가려 당사자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참조).